##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16 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김선교·서천호·김성원

송석준 · 김상훈 · 최보윤

김예지 • 김위상 • 박덕흠

김소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 인 영향을 주어 비·눈·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,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,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및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,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 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 로써 대기질 개선,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향상을 촉진하려 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) 기상청장은 대기질 개선,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8조의2(기상 조절 기술개발
	및 활용) 기상청장은 대기질
	개선,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
	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
	발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
	<u>야 한다.</u>